

# [한양사회혁신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혁신 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사회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대학의 중장기 사회혁신 기본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에 관한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사회혁신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혁신센터와 사회혁신연구센터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장 조직

###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총장, 경영부총장,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회봉사단장
2. 교직원 위원: 본교 교원, 직원 중 총장이 위촉
3. 학생 위원: 본교 재학생 중 총장이 위촉
4. 외부 위원: 교외 사회혁신 분야에 종사하는 인사 중 총장이 위촉

### 제4조(선임)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 ② 부위원장은 경영부총장으로 한다.

### 제5조(임기)

- ①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총장이 임명하는 위촉위원의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연직 또는 위촉위원의 결위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임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나 결위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내부위원은 본교의 사회혁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다.
- ④ 학생위원은 대학의 사회혁신 정책수립 과정과 실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 ⑤ 외부위원은 본교의 사회혁신 방향에 대한 자문과 대외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한다.

### 제7조(간사)

- ① 위원회는 사회혁신센터에서 주관하며,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사회혁신센터장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상임위원회)

- ① 위원회는 산하에 사회혁신센터와 사회혁신연구센터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 문제를 조정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부단장으로 한다.
- ③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장 회의

### 제9조(회의의 소집)

-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 **제10조(의결)**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화상통신, 전자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부칙**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